

변경대비표

[신탁계약서]

1. 집합투자기구 명칭 : NH-Amundi 오뚝이 증권자투자신탁[주식혼합-파생형]

2. 효력발생일 : 2016년 9월 30일

3. 정정사유 :

- 모펀드 해지에 따른 일부 모펀드삭제 (NH-Amundi 단기채형 증권모투자신탁[채권])
-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투자신탁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 유보)

4. 정정내역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제 2 조(용어의 정의)	1~9. (생략) 10. “리밸런싱”이라 함은 이 투자신탁 종류 A(Class A) 수익증권의 누적기준가가 투자설명서에서 정한 목표기준가에 도달한 이후 또는 투자설명서에 정한 경우로써 KOSPI 기준지수에 도달한 이후 제 3 조제 4 항제 1 호의 NH-Amundi 1.5 배 레버리지 증권모투자신탁 [주식-파생형], 제 3 조제 4 항 제 2 호의 NH-Amundi 단기채형 증권모투자신탁[채권] 내지 제 3 조제 4 항 제 3 호의 NH-Amundi 단기국공채 증권모투자신탁[채권]의 투자비율을 투자설명서에서 정한 비율로 조정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.	1~9. (현행과 동일) 10. “리밸런싱”이라 함은 이 투자신탁 종류 A(Class A) 수익증권의 누적기준가가 투자설명서에서 정한 목표기준가에 도달한 이후 또는 투자설명서에 정한 경우로써 KOSPI 기준지수에 도달한 이후 제 3 조제 4 항에 따른 NH-Amundi 1.5 배 레버리지 증권모투자신탁 [주식-파생형]과 NH-Amundi 단기국공채 증권모투자신탁[채권]에 대한 투자비율을 투자설명서에서 정한 비율로 조정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.
제 3 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등)	④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 (생략) 2. NH-Amundi 단기채형 증권모투자신탁[채권] 3. (생략)	④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. (현행과 동일) 2. NH-Amundi 단기채형 증권모투자신탁[채권]<삭제, 2016.09.30> 3. (현행과 동일)
제 18 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	집합투자업자는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1. 제3조제4항제1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%이상으로 한다. 2. 제 3 조제 4 항제 2 호 내지 제 3 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%미만으로 한다. 3. (생략)	집합투자업자는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 1. 제3조제4항에 따른 [주식-파생형] 모투자신탁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%이상으로 한다. 2. 제 3 조제 4 항에 따른 [채권형] 모투자신탁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%미만으로 한다. 3. (현행과 동일)

<p>제 33 조(이익분배)</p>	<p>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<u>다만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<신설></p>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동일)</p> <p>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이익금이 '0'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</u> 2. <u>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</u>
<p>부칙</p>	<p>-</p>	<p>(변경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6 년 9 월 30일부터 시행한다.</p>

[투자설명서]

1. 집합투자기구 명칭 : NH-Amundi 오뚝이 증권투자신탁[주식혼합-파생형]

2. 효력발생일 : 2016년 9월 30일

3. 정정사유 :

- 모펀드 해지에 따른 일부 모펀드삭제 (NH-Amundi 단기채형 증권모투자신탁[채권])
-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투자신탁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 유보)

4. 정정내역

구분	변경전	변경후
제 2 부. 2. 집합투자 기구의 연혁	-	최근연혁 추가
제 2 부. 7. 집합투자 기구의 투자목적	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KOSPI 200 일일등락률의 1.5 배 수익을 추구하는 모투자신탁(NH-Amundi 1.5 배 레버리지 증권모투자신탁[주식-파생형], 이하 “1.5 배 레버리지 주식파생형 모펀드”)을 법시행령 제 94 조 제 2 항 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또한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(NH-Amundi 단기채형 증권모투자신탁[채권] 내지 NH-Amundi 단기국공채 증권모투자신탁[채권], 이하 “채권형 모펀드”)에 투자하여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수익을 추구합니다.	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KOSPI 200 일일등락률의 1.5 배 수익을 추구하는 모투자신탁(NH-Amundi 1.5 배 레버리지 증권모투자신탁[주식-파생형], 이하 “1.5 배 레버리지 주식파생형 모펀드”)을 법시행령 제 94 조 제 2 항 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또한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(NH-Amundi 단기국공채 증권모투자신탁[채권], 이하 “채권형 모펀드”)에 투자하여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수익을 추구합니다.
제 2 부. 8. 집합투자 기구의 투자대상	가. 투자대상 ②-1. NH-Amundi 단기채형 증권모투자신탁[채권] < 모펀드 및 관련 내용 삭제> ②-2. NH-Amundi 단기국공채 증권모투자신탁[채권]	가. 투자대상 ② NH-Amundi 단기국공채 증권모투자신탁[채권]
제2부. 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가. 이익배분 (1)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(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)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. 다만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. <신설>	가. 이익배분 (1)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(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)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 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. <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> 2016년 9월 30일 이후 매년 결산·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

		<p>에 대하여 과세됩니다(다만,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·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·분배되어 과세됩니다).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
<p>[제 2 부 별첨 1] 모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p>	<p>1. NH-Amundi 1.5 배 레버리지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-파행형] 2. NH-Amundi 단기채형 증권 모투자신탁[채권] < 모펀드 및 관련 내용 삭제 > 3. NH-Amundi 단기국공채 증권모투자신탁[채권]</p>	<p>1. <u>현행과 동일</u> 2. <삭제> 2. NH-Amundi 단기국공채 증권모투자신탁[채권] (이하 현행과 동일)</p>

[간이투자설명서]

1. 집합투자기구 명칭 : NH-Amundi 오뚝이 증권투자신탁[주식혼합-파생형]

2. 효력발생일 : 2016년 9월 30일

3. 정정사유 :

- 모펀드 해지에 따른 일부 모펀드삭제 (NH-Amundi 단기채형 증권모투자신탁[채권])
-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투자신탁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 유보)

4. 정정내역

구분	변경전	변경후
I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	<p>집합투자기구 특징</p> <p>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KOSPI 200 일일등락률의 1.5 배 수익을 추구하는 모투자신탁(NH-Amundi 1.5 배 레버리지 증권모투자신탁[주식-파생형])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또한 <u>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(NH-Amundi 단기채형 증권모투자신탁[채권] 내지 NH-Amundi 단기국공채 증권모투자신탁[채권])</u>에 투자하여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수익을 추구합니다.</p>	<p>집합투자기구 특징</p> <p>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KOSPI 200 일일등락률의 1.5 배 수익을 추구하는 모투자신탁(NH-Amundi 1.5 배 레버리지 증권모투자신탁[주식-파생형])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또한 <u>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(NH-Amundi 단기국공채 증권모투자신탁[채권])</u>에 투자하여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수익을 추구합니다.</p>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2. 투자전략	<p>1. 투자목적</p> <p>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KOSPI 200 일일등락률의 1.5 배 수익을 추구하는 모투자신탁(NH-Amundi 1.5 배 레버리지 증권모투자신탁[주식-파생형], 이하 “1.5 배 레버리지 주식파생형 모펀드”)을 법시행령 제 94 조 제 2 항 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또한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(NH-Amundi 단기채형 증권모투자신탁[채권], 이하 “채권형 모펀드”)에 투자하여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수익을 추구합니다.</p>	<p>1. 투자목적</p> <p>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KOSPI 200 일일등락률의 1.5 배 수익을 추구하는 모투자신탁(NH-Amundi 1.5 배 레버리지 증권모투자신탁[주식-파생형], 이하 “1.5 배 레버리지 주식파생형 모펀드”)을 법시행령 제 94 조 제 2 항 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또한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(NH-Amundi 단기채형 증권모투자신탁[채권] <u>내지 NH-Amundi 단기국공채 증권모투자신탁[채권]</u>, 이하 “채권형 모펀드”)에 투자하여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수익을 추구합니다.</p>
III.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	<p>1. 과세</p> <p><신설></p>	<p>1. 과세</p> <p>◆ 2016년 9월 30일 이후 매년 결산·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. 따라서 투자자가 환매를 청구하는 해당연도에 과세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